

소유권적 언론자유에 대한 일고찰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언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 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키워드 : 로크, 사회계약론, 소유권적 언론자유, 자연권]

1. 서론

1789년에 선언된 프랑스 인권 및 시민권 선언 제11조에는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도 “모든 인간은 의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들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를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권영성은 기본적 인권에 대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고 생각하는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81, 222쪽). 버지니아 권리 장전 및 미국 독립선언, 우리나라 헌법 모두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언론의 자유는 천부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제퍼슨도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를 생태적, 천부적 자연적 권리로 정당화 하고 있다(한병구, 1996, 27쪽). 그러나 천부적 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언급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언론자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자연권과 자연법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자연권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발로 서게 해주고 자유롭게 하며 타인으로부터 보호받는 영역을 침해하지 말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자연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권으로서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언론 자유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전통적 고전적인 천부적인 권리인 자연권에 대한 논의는 존 로크에 의해서 대표된다(한병구, 1996, 4쪽). 존 로크가 자연권 사상에 입각한 자유를 논하고 있고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시장사회를 전제로 한 국가와 정치사회를 논하고 있음을 그의 논리구조 속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리적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허버트 알칠이 그의 저서 『밀턴에서 맥루한까지 From Milton to MacLuhan』에서 로크를 다루고 있지만(제7장 존 로크와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언론자유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래에 논의된 것 외에는 없다.

“로크의 이름은 미국인의 신념체계와 미국 언론인의 직업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와 영원히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계약설로서 우리의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하에 반영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혁명의 권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폭압적인 지도자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필요하다면 힘과 폭력에 의해서라도 악당들을 전복할 절대적 권리, 아니 어쩌면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시민의 자유,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할 자유와 우리의 의견과 신념을 인쇄하고 발행할 자유를 단단히 묶어 주고 있다”(Altschull, 1990/1993, p. 102).

알칠은 로크의 동의에 의한 정치와 혁명의 권리만 언급할 뿐 로크의 자연권 이론과 언론자유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로크의 시장사회와 언론자유, 그리고 국가와 언론자유간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민주체제에서 언론자유는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운영된다. 그 결과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가 정치적 권리인지 아니면 시장사회에서의 저작권이나 언론기업활동 등 소유권적 권리인지가 혼재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전히 시장관계에 기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이론은 더 이상 시장의 문제들을 이론체계 내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자연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장의 문제들을 자유민주주의 이론 속에 포함하면서 논의를 전개한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의 언론자유의 본질과 그리고 시장과 언론, 국가와 언론 간의 관계를 그의 논리구조 속에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재구성이이라고 한 것은 로크의 사상체계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들을 토대로 언론문제를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재구성을 통하여 로크의 자연적 권리와 자연상태에 대한 전제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자연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로크의 소유권적 논리는 언론자유권리 속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로크의 시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으며 로크의 시민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논리에 따라 언론자유라는 권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2. 로크의 소유권적 언론자유

1) 로크의 자연권과 자연법

전통적으로 자연권과 자연법은 어떠한 주어진 사회적 혹은 정치적 질서와도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연권은 특정한 사회조직이나 사회제도적 역할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의 성격과 독립적인 근거에서 소유되는 권리라 할 수 있다(Bowie & Simon, 1977/1985, pp. 76-77).

로크는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소유권이라 부르고 있다 (Locke, 1952/1982, sect. 123). 이러한 소유권은 태어나면서 갖는 자연권이다(Locke, 1952/1982, sect. 87). 이 자연권 중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이기 이전에 신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불가침의 것¹⁾이며,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자신의 일신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Locke, 1952/1982, sect. 27)는 자기소유권 명제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할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가지 공통된 방식은 그러한 자유가 근거하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황경식, 1995, 138쪽). 로크가 전제로 하는 인간의 기본권리는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이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사용이나 사물의 이익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개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처분에

1)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계약이나 자기 자신의 동의로서 자기를 다른 사람의 노예로 만들거나 또는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자의적 권력 밑에 자신을 종속시킬 수 없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이상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버릴 수 없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Locke, 1952/1982, sect. 23).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권에 따르면 각 인간은 자신의 사상, 재능, 능력, 행위, 신체를 통제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와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는 로크적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가를 얻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른다든가 하는 일 없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자기의 소요물과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다(Locke, 1952/1982, sect. 4). 그리고 로크적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기 소유권적 권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크는 그곳에서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은 상호적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종속 또는 복종되는 일 없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다(Locke, 1952/1982, sect. 4). 따라서 로크의 자유는 자기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자연권이라 할 수 있다.

로크는 이러한 자기 소유권적 명제로부터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끌어내고 있다. 자신의 육체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된 생산물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Locke, 1952/1982, sect. 27). 따라서 로크적 개인은 자신이 투여한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로크적 개인의 자기소유 명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한에서 발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소유 명제보다 우선되는 명제는 자기 보존권, 즉 생명권이라 할 수 있다. 로크는 조물주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인류에게 태초에 땅과 그 과실을 공유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Locke, 1952/1982, sect. 26). 여기서 로크의 자기소유명제로부터 도출된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권적 논리와 자연물에 대한 공유권적 논리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로크는 자연적 산물이 특정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점유되어야 하는 데, 즉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하는 데 그러한 사적 소유를 정당화

시키는 것은 각자의 소유인 노동력을 투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Locke, 1952/1982, sect. 27). 로크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와 노동은 자신의 것이라는 자기소유명제로부터 원래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땅의 산물에 대한 개인적 전유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을 합한 내용을 소유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소유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로크의 자연상태는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누구나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이 있다는 것이다.

로크의 자연법은 첫째,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에 해당하는 데 이성의 소리에 다소라도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유일의 전지 전능하신 조물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ocke, 1952/1982, sect. 6).

두 번째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로크의 단서다. 로크에 의하면 자기소유명제로부터 도출된 소유권적 논리는 생명권적 권리에 의하여 제약받아야 한다고 본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것이라는 두 전제로부터 로크는 원래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땅의 산물에 대한 개인적 전유를 일정한 제한 내에서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 제한이 바로 로크적 단서다. 로크에 의하면 단서는 “조물주가 인류에게 부여해 준 공통적인 규칙이며 척도가 되는 이성의 소리”(Locke, 1952/1982, sect. 11)로서 자연법이라 할 수 있다. 로크적 단서는 첫째, 어떤 누구도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의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지만 “적어도 공유물로서 다른 사람

에게도 충분히 그리고 만족할 정도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Locke, 1952/1982, sect. 27) 전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모두 자기 자신의 보존에 대한 권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의 생활 필수품들을 전유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어도 그것이 부패하기 전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것도 상하게 하든가 파괴해버릴 목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 단서는 자신의 노동을 투하하는 범위 내에서만 전유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Locke, 1952/1982, sect. 31).

2) 로크의 자기소유권과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

로크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능에 대한 원초적인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발휘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소유 형제로부터 언론의 자유권이 천부적인 자기권리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음성기관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언론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유라 할 수 있다. 로크는 그의 『인간오성론』에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오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식의 원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로크는 정신을 어떤 관념도 갖지 않은 백지상태라고 가정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 기초해 있고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Berlin,²⁾ 1956/1992, p. 48). “외적 감각 대상들에 관한 또는

2) 벌린은 그의 저서 『계몽시대의 철학』 ‘제1장 로크’에서 로크의 『인간오성론』에서 원문을 발췌한 후 그에 대한 주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 벌린의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반성한 정신의 내적 작용에 관한 우리의 관찰이 오성에 모든 사고의 재료들을 공급해준다”고 말하고 있다(Berlin, 1956/1992, p.48). 로크는 모든 관념들이 나오게 되는 지식의 원천은 외적 관찰에서 얻는 것으로 우리의 감관에 의존하며 감관에 의해 오성에 제공되는 “감각”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 작용으로 영혼이 반성하고 숙고할 때 외부에 있는 사물들로부터 얻어질 수 없는 일련의 관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Berlin, I. 1956/1992, pp. 48-49). 즉 감각의 대상으로서 외부의 물질적 사물들과 반성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정신 내부의 작용들에 대해 우리의 모든 관념들이 생기게 되는 유일한 기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관과 자신의 오성에 제공되는 감각, 자신의 정신작용으로 일어나는 관념들은 당연히 자신의 소유다. 언론의 실현행위가 자신의 감관, 오성, 정신 내부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관념과 지식에 기반한 활동인한 오직 그것을 소유한 개인만이 양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소유권에 입각한 천부적인 자연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로크적 개인의 언론행위 역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로크적 단서를 어길 수 없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언론행위는 토지나 자연물과는 달리 자신의 언론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언론행위의 영역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첫번째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활용하는 언론행위 자체는 부패나 폐괴를 동반하지 않음을 제2의 단서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자신의 노동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제3의 조건 역시 만족시킨다. 창조행위인 학문이나 예술활동 역시 언론행위와 동일한 논리로 완벽한 자유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 동시에 창조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이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소유권 및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인 신체를 활용한 어떤 언론행위도 로크의 단

발췌문과 그의 주석을 중심으로 인간오성론을 탐독했다.

서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크적 개인이 자신의 신체만이 아니라 언론활동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사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처럼 로크적 단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론노동 결과를 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유형화하는 경우 역시 그 유형물에 대해서는 로크적 단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로크적 개인의 언론행위는 로크적 단서를 어기지 않는 한 절대적인 자유권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언론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은 당연히 그 언론행위자의 소유가 된다. 타인의 언론행위를 침해하거나 타인소유의 언론행위의 결과물을 침해한 경우에는 자연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과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정도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데” “그러한 위법행위를 후회케 하고 또한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보임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시는 동일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벌을 가할 수 있다”(Locke, 1952/1982, sect. 8).

우리는 로크의 자기 소유권적 자연권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자연권의 하나로 추론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언론의 자유권을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권적 권리로서 소유하며 로크의 단서인 자연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한 소유권적 언론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로크적 개인의 언론자유와 시장사회

로크적 개인주의의 소유적 특성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체, 재능의 고유한 소유주로서의 개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개인은 자기신체와 재능의 소유자인 한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로크에게 있어

서 인간의 본질은 타인의 의지에 대한 종속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자유란 소유의 함수이다(Macpherson, 1962/1991, p. 26). 그럼으로써 소유권은 사회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되었다.

기본적으로 로크의 자유권은 소유권에 기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신체와 재능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로크적 개인의 언론 자유는 존재한다. 로크적 개인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소유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로크적 개인은 자기 자신을 활용하는 데 대한 배타적인 권리(배타적 권리)를 모두 평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타적 권리만큼 타인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권리(권리간의 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로크적 방편은 이성의 명령인 로크적 단서와 교환을 통한 합리적인 상호 이익의 추구다. 따라서 로크의 자기소유권은 상호의 정당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시장사회를 전제로 하였을 때만이 사회로서 성립 가능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립된 섬의 로빈슨 크루스만이 존재하게 된다.

로크의 단서는 시장사회에서 변질된다. 모든 전유는 타인을 위해 충분하고 만족할 정도로 남겨져야 한다는 제1단서는 모든 자연자원이 전유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면, 즉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변질된다. 애초에 제1단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노동을 통해 생계수단을 획득해야 한다는 자연권 결과로 주장된 것으로 각 개인은 생계수단을 전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Macpherson, 1962/1991, p. 291). 따라서 더 이상 충분한 자연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전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질서를 인정하고 있다. 로크는 제1단서의 변형을 통하여 시민국가에서 자연자원의 독점권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런 논리로부터 시장사회에서 언론행위를 위한 자연자원의 독점화는 자연

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의 언론활동은 그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족하게 된다.

부패해서 쓸모없이 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로크의 제2단서는 화폐의 도입으로 폐기된다. 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가치를 갖지 못하지만 교환가치로서 발휘될 때 사용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화폐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의 축적은 정당화 된다(Macpherson, 1962/1991, p. 208). 이러한 화폐의 도입으로 로크적 단서의 위반 없이 언론행위의 결과물을 을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로크적 개인은 자신의 소유명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고 동시에 언론자유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됨으로써 언론행위를 통한 자본축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로크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처분, 교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³⁾ 따라서 로크적 개인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로크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경우 로크의 제3단서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즉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노동을 자연에 투하했을 때 그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일단 노동이 투하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과 상치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은 노동력을 소유한자가 노동을 자연에 투하하였을 때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노동력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노동력의 소유가 타인의 소유로 전환됨으로 그 노동력의 결과물은 당연히 그 노동력을 구매한 자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 C. B. 맥퍼슨은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로크의 강조에 주목한다. 그는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와 노동에 투하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로크의 논리는 임금을 대가로 그의 노동을 양도할 수 있는 자연권의 가정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Macpherson, 1962/1991, pp. 214-215).

로 이것은 로크의 제3의 단서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언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타인에게 판매한 로크적 개인의 경우 자신의 노동력을 구매한 자의 통제에 따라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언론행위의 결과물은 자신의 노동력을 구매한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로크적 시민국가에 있어서 언론행위에 대한 자연권적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에 국한되게 된다.

로크적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자연물에 투하하여 언론활동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창조하는 경우 그것은 자신의 소유이다. 언론활동 수단의 창조에 필요한 자연적 대상물이 다른 사람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산물을 부패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내에서 이러한 소유물은 정당하다. 로크적 개인은 자신이 발명한 언론활동수단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화폐로 교환할 수 있음으로써 로크적 단서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활동수단을 활용하여 언론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로크적 논리를 모두 만족시킨다.

로크적 개인에게 있어서 유용성이 높은 언론활동수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유용한 언론활동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활동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의 소유유무가 언론활동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로크적 개인은 노동과 시장을 통한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언론활동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언론수단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독립도 정당하다.

로크는 자본축적을 통한 언론소유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자본가에게 부여함으로써 언론자본가의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고 있다. 로

크적 자본가는 언론능력을 갖고 있는 무산자들의 언론능력을 구매하여 자신의 언론활동에 봉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언론상품을 생산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다. 무산자들이 자신의 신체기관이나 효과가 낮은 언론수단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산자들은 효과가 높은 언론수단을 소유, 구매, 임대하거나 언론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자신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더욱 더 효과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사회에서 로크의 소유권적 언론자유는 오직 소유권에 의해서만 통제되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통제도 정당하지 못하다. 로크적 개인들은 시장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적 언론권리를 처분, 양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로크의 소유권적 언론자유는 시장을 통하여 실현되며 시장에 의하여 제한된다.

4. 로크적 개인의 언론자유와 국가

로크적 개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연법이 정해주는 일체의 권리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Locke, 1952/1982, sect. 4).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연법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재판하여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Locke, 1952/1982, sect. 87). 이러한 권리는 로크적 개인의 소유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수행 여부 역시 로크적 개인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로크적 입장에서 볼 때 권리 역시 하나의 소유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분, 양도, 교환할 수 있는 재산이다. 로크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연권적 권리인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을 자신의 이익

을 위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로크적 개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권력을 공동사회의 손에 위임함으로써 사적인 재산권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공동사회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체의 분쟁을 판결하게 하고 동시에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까지도 양도하여 자연상태에서 국가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

로크적 개인에게 주권적 시민국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광범위한 불평등이 출현함으로써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Locke, 1952/1982, sect. 85).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일 뿐 결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Locke, 1952/1982, sect. 131).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자연법에 의해 유지되던 자연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게 되자 사람들은 개개인의 법의 행사권을 떠맡아 더 효율적으로 권리행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가 설정하는 실정법은 자연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로크적 개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공동체에 위임함으로써 자신들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언론자유 권리뿐만 아니라 언론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사회 이전에는 자신의 사적 판단과 사적인 자연적 권리으로 수행하던 것을 이제는 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더욱 더 확고히 자신의 사적재산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로크는 최초의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신체와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봄으로써 언론자유의 자연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생명의 보존과 노동의 투입에 근거하는 소유에 대한 모든 개인의 자연권을 무제한적 전유의 자연권으로 변형시켜 언론자유의 불

평등을 정당화시킴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차별적 자연권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로크 개인주의적 언론관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자기 신체와 재능에 대한 유일한 소유주로서 언론자유를 가지지만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 가능함으로써 자신의 언론활동능력 역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전제들을 통해 로크는 평등한 개인 대중을 언론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자와 지시 받는 자라는 매우 다른 권리를 갖는 두개의 계급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러한 두 계급으로의 변형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애초의 자연권적 평등이 소유의 차별성에 의해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로크적 시민국가는 로크의 단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로크의 단서를 위배할 수는 없다. 로크적 시민국가는 자신의 소유 명제로부터 이끌어 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다만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 로크적 시민국가는 소극적인 언론정책에 국한되며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은 의무 밖의 일이다. 로크적 국가는 국익이라는 명목으로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한 행위는 곧 자연법에 대한 위반이자 소유권 침해인 것이다. 따라서 로크적 국가는 경찰국가인 것이다. 로크적 국가의 분쟁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권이며 누가 그 소유권을 침해하였느냐를 판단하는 것과 누가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국가는 자연상태에서 보장된 각 개인의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와 재능에 대한 소유권을 평등하게 부여받은 로크적 개인은 그러한 신체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함으로써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대사회적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언론활동수단의 소유에 대한 차별성이 나타남으로써 개개인간의 언론활동의 차별성이 나타나며 특히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야 하는 무산자는 자신의 언론활동을 제약받기도 하며 또한 언론활동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도 갖지 못한다. 국가는 이런 언론활동의 불평등을 사회적인 질서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언론자유나 언론에 관련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을 동반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갖고 또한 이러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 권력은 동의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으며 이런 동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개인 자신을 위한 동의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무산자와 유산자로 나누어진 로크적 개인에게 있어서 언론의 자유권리와 의무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유와 자유간의 함수관계에 있는 로크의 논리는 더 많은 소유를 한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자유 속에는 언론의 자유 역시 포함된다. 즉 소유가 많은 사람은 타인의 언론재능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또는 언론활동 수단을 구매하여 더욱 더 많은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언론자유권은 소유권적 권리로서 자연권적 권리가 되며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다. 반면에 무소유자는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론자유 권리의 상당 부분은 이제 타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무산자에게는 자신의 언론 자유권이 축소된 만큼 의무도 많아진 것이다. 즉 타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영역만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유산자의 소유권적 언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더욱 더 축소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방어할 수 있는 언론자유권리가 그 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로크적 시민국가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자유를 많이 소유한 유산자

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그것은 유산자의 소유이다.⁴⁾ 유산자들만이 시민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자들의 소유인 것이다. 따라서 유산자들의 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민국가에의 참여 및 운영은 전적으로 유산자들의 것이며 무산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Locke, 1952/1982, sect. 140). 유산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언론수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운영과 구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반면에 무산자는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자본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로크의 시민정부 하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소유권적 차별에 의하여 성립된 언론자유권의 차별성은 시민국가에서 더욱 더 공고화될 뿐만 아니라 무산자의 경우 정부의 구성, 운영, 행위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비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수립으로 무산자와 유산자와의 언론자유에 대한 차별성은 더욱 더 확대된다. 다만 무산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생명권과 자신들이 양도하지 않은 신체와 재능의 잔여분만이 보호받을 뿐이다. 이것은 시민국가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고 시민국가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로크는 모든 사람을 시민국가의 지배대상이 되는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재산을 가진 자만이 지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무산자는 비합리적인 사람들로서 지배대상일 뿐 지배할 수 있는 구성원이

4) 시민국가에 들어감으로써 보호해야 할 소유가 생명, 자유, 재산일 때 모든 사람은 시민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재화와 재산만으로 한정될 때는 재화와 재산만 가진 자들만이 그러한 자격을 갖는다고 맥퍼슨은 로크의 시민국가를 해석하고 있다(Macpherson, 1962/1991, p. 333).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 로크적 자연상태의 최초 단계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정복하기 위해 전유하는 것이 곧 합리적 행위가 되는 그러한 자연적 환경에 처한다. 합리적 행위의 본질은 근면한 전유이다. 그러나 일정한 영토 내에 화폐가 도입됨에 따라 순식간에 모든 토지는 전유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토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 로크적 논리에서 볼 때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은 본래적 의미에서 근면하거나 합리적일 수 없다. 그들은 애초의 합리적 행위의 본질이었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전유하고 개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산자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즉 자연법이나 이성을 통해 자기들의 생활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게으른 가난뱅이는 스스로 타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가난한 노동자는 그들의 불운한 지위로 인해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Macpherson, 1962/1991, p. 307).

이러한 논리에 입각할 때 무산자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합리성을 요구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할 귀결이다. 로크는 소유권적 논리로부터 유산자만이 합리적인 시민국가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끌어낼 뿐만 아니라 합리적 도덕의 계급적 차별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하여 무산자의 비합리성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무산자는 유산자에게 통치당함으로써 자신의

5) 매퍼슨은 “로크가 어떤 사람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상적 의미에서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시민 사회의 구성원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재산’을 가진 자들만이 완전한 그 구성원이 될 수 있기도 한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오직 그들만이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둘째, 그들만이 시민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에 필요한 조건인 합리적 생활—이성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산이 없는 노동하는 계급은 시민사회에 단지 종속될 뿐 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Macpherson, 1962/1991, p. 334).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산자의 무산자에 대한 통치는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유산자의 통치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무산자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크적 무산자는 시민국가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대한 언론자유를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다. 합리적 도덕의 계급적 차별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될 때 그것은 위험하고 불안전한 자연상태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의 법에 따라 그들의 생활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민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의 시민국가는 무산자의 비합리적인 행위로부터 유산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무산자들의 비합리적인 언론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 무산자에게는 유산자 계급이 흡수의 절대권력으로 등장한다.

로크적 국가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언론행위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언론자유를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 침해가 아닌 다른 논리로서 언론자유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통제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런 통제에 대해서는 통제를 폐지시켜 달라는 언론자유운동은 정당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 언론자유조건들 중 적극적 언론자유보장의 요소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요소들은 시장을 통해서만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국가는 소유권에 기반을 둔 소극적 언론자유통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어떠한 규제행위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5. 로크적 단서의 현대적 의미

로크의 소유권적 언론자유는 로크의 단서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로크의 단서는 조물주가 준 이성의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준수하여야 하는 자연법이다. 로크의 시민국가는 로크적 단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사적 처벌권을 양도받아 사유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로크의 국가 역시 로크의 단서를 위반할 수 없다. 시민국가가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는 경우 로크적 개인들은 권리양도를 철회하고 새로운 시민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성의 소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로버트 노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공유물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전유할 수 있다”는 로크의 제1단서를 “개인의 전유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해석한다 (Nozick, 1974/1990, p. 269). 그는 무소유주물의 양에 한도가 있는 자연대상의 경우 언젠가 공유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마지막으로 무소유주물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자기 앞의 마지막 소유자가 자신을 악화시키고, 동시에 마지막 소유자 앞의 사람 역시 마지막 소유자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악화시키는 순환고리에 빠져 결국에는 최초의 소유자 역시 그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Nozick, 1974/1990, p. 270).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노직은 어떤 사람이 생활 필수품의 전량공급을 사유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악화를 배상함으로써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어떤 사람의 사유화가 이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사유화한 그가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배상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유화는 취득에 관한 정의 원리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자 부당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로크단서의 악순환을 끊는다.

맥퍼슨도 로크가 시민국가에서 제1단서를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변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로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하고 만족할 정도를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유를 통하여 훨씬 더 증대된 생산성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는 적어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분배한다면 단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Macpherson, 1962/1991, p. 289).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정된 자연대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중에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물을 증대시켜 타인의 악화된 상황이상으로 보상한다면 이러한 사적 전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소유권이 로크적 단서에 저촉된다는 것이 일단 알려지면 그의 재산을 그가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막에 유일한 샘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샘을 사유화하여 자기 멋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발견한다면 소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막에서의 유일한 샘의 사유화에는 제약을 받게 된다(Nozick, 1974/1990, p. 271).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사회적으로 한정된 언론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권의 독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제한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악화시킨 만큼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파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나 위성 등 한정된 자원을 사유화하거나 또는 자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유권을 주는 경우 역시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만큼 충분한 사회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소유구조의 언론매체인 경우 공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노직의 해석은 로크의 제1단서를 소유권 문제에 국한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확대한다면, 즉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서 일반적인 이익갈등의 문제까지 확대한 경우에는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는 J. S. 밀의 해악의 원리와 일치하게 된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는 그 자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Mill, 1977/1992, p. 25).

로크의 제1단서를 해악의 금지라는 일반론에 따른다면 각 개인들 간의 권리가 상충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로크적인 논리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크의 시민국가에서 각 개인들의 권리가 상충할 경우 그 해결책으로 일반론적인 해석이 해악의 원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로크의 소유권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시장논리인 진리의 공개시장에 의한 자율조정의 과정으로 해결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 후자의 논리를 따르다면 언론활동수단의 소유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언론활동도 정당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타인의 언론활동을 사회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게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언론활동 수단을 사용하여 화성인이 침입하였다고 허위보도하여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 어느 누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후자의 논리를 따를 경우 그 혼란의 비용을 책임지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게 된다.

로크의 제2단서는 시장사회와 화폐의 사용이 전일화 됨으로써 단서로서의 효용을 상실했다. 로크적 개인이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을 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생산에는 자본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는 시장사회 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고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로크적 개인은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여 화폐로 전환시키지

않고 부패하도록 하거나 못쓰게 만드는 행위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위이며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제2단서는 화폐와 시장사회의 등장으로 폐기됨에 따라 로크의 제2단서로는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끌어낼 수 없다.

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하한 범위 내에서 전유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로크의 제3의 단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 한다. 그는 “나의 소유물과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혼합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을 상실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즉 만약 내가 한 깡통의 주스를 바다에 부어 그 분자들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나는 이로써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주스를 낭비해버린 것이 되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제3의 단서를 좀더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Nozick, 1974/1990, p. 268). 그는 자연적 대상에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그 무엇을 개선시키고 그것을 더 가치있게 만들면 그 가치의 부여만큼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단서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우에라야 제1단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Nozick, 1974/1990, p. 268).

노직의 이러한 제한은 자연적 대상의 공적 소유와 그런 공적 소유물을 사유화하는 데 있어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공유물에 노동을 가함으로써 가치를 증진시킨 것만큼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제외한 모든 사적 소유물 내에는 공적 영역이 언제나 존재한다. 공적인 자연대상에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그 만큼 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1단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로크의 단서들은 시장사회와 화폐의 등장으로 그 제한들이 약화되고 있지만 로크적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특히 시장사회는 자연적 대상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로크의 단서를 피해갈 수 있는 조건을 내재하고 있다. 결국 시장사회에 있어서 로크의 단서는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와 자신의 노동이 창출한 가치만큼의 사적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때만이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미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소유권적 논리에 따른 해악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와 재능만을 이용한 언론행위는 완전한 자유의 영역이 된다. 그 결과 학문과 예술 등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이 된다. 이들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론활동에 대한 기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로크의 어떠한 단서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술과 학문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영역이며 그것에 대한 통제는 오직 시장에 의하여서만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해악의 논리에 따르면 로크적 개인의 표현 자유는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음란물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강제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데 대한 비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해악을 끼친다. 자신의 소유인 거리의 벽면에 음란물을 전시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피하고 싶은 음란물을 보게 강제하는 행위는 로크의 단서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음란행위나 표현은 자유의 영역이며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음란물 표현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경우 그것을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권리이며 그것을 소비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노출위험비용을 그러한 음란물을 소비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해악의 논리에 따른다면 정당하다.

로크적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재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

여 타인의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면 그것 역시 해악의 논리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 일반론적인 해악의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 처벌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 만큼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그러한 위법행위를 후회케 하고 또한 그를 하나의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시는 동일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벌을 가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와 재능에 대한 언론자유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내에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갖는 반면에 언론수단에 대한 소유는 로크의 단서뿐만 아니라 소유권적 논리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아야 한다. 언론수단은 공적인 재산인 자연적 대상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사유화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 상실분을 보상해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창출이 존재하는 경우만이 정당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언론수단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공적인 소유가 존재함으로 가치를 부여한 자의 소유권은 그만큼 제한 받아야 한다.⁶⁾ 자연적 대상을 변화시

6) 어떤 사람이 외진 장소에서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여 그것 전체를 전유한 경우 그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가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물질이 없는 상태에 계속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그 물질을 우연히 발견해 냈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 물질에 대한 그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기저 입장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한될 수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그 물질의 상속은 제한될 지 모른다.

특허권의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발명자는 그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물체를 발명하여 다른 사람의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의 소유권은 타인들로부터 그것을 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추후 언젠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해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특허권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적인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로크적 논리에서 타당하다(Nozick, 1974/ 1990, pp. 277-278).

켜 가치부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부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소유성격은 남아 있다. 공적인 소유성격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사적 활용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다. 가령 전파를 활용하는 기술은 증대될 수 있지만 전파자체를 변형시키지 않는 한 그 전파는 영원히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파는 사적 소유로의 전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파를 활용하는 텔레비전은 인쇄매체보다 더 많은 공적 소유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공적인 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소유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로크의 단서는 작위적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논리이다. 즉 로크적 단서는 무작위로 인하여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가령 예를 들면 얇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논리는 개인이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사회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작위는 이미 일어난 불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로크의 단서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들의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강제시킬 수 없다. 오직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통제되며 타인의 상황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소유권자의 재량에 맡겨짐으로써 소유권자의 공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어떠한 행위규범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로크의 언론자유권으로부터 공적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낼 수 없다. 그리고 로크의 단서는 각자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을 금지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행동하도록 방치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힘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증한다. 즉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와 힘, 즉 그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권리는 그의 힘을 행사하는 결과까지 연장한다(Gauthier, 1984/1993, p. 293). 그 결과 개인적 언론자유활동을 통하여 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 즉 개인선택과 사회전체선택이 다른 경우에도 전체선택은 개인선택에 의존 한다.

6. 로크적 언론자유 모델과 그 한계

우리는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자기소유 명제에 입각한 자연권에 속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끌어냈다. 로크의 논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소유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언론자유론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소유권적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와 언론자유 간의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권으로서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통제에 대한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도 제시하고 있다.

로크의 소유권적 언론자유개념은 자신의 소유물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명예라든지 사생활 등등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소유물에 대한 처분, 교환, 양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재능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자신의 초상권을 갖게 되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논리

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로크의 언론자유권은 평등한 자연권적 권리인 언론자본축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언론자유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로크의 사상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로크는 무엇보다도 소유권을 전체적인 사회적 질서의 한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지배질서에 선행하는 본질적인 개인적인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로크의 소유권이론이 보편적인 소유권이론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로크는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 및 자연자원에 대한 공유권을 주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명제는 기독교 경전내용만을 타당성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의 언급처럼 독단적이다 (1991, 350쪽). 따라서 자연권적 권리로서 소유권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광범위한 불평등이 출현함으로써 텁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국가의 경우 보호받을 자산이 없는 무산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도구를 만드는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자연적인 권력을 양도하였다는 로크의 논리는 비합리적이다. 즉 합리적인 무산자라면 로크식의 계약조건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하겠다.

로크의 논리로부터 소극적 자유논리는 끌어낼 수 있어도 적극적 권리 를 끌어낼 수 없다. 황경식은 자유를 불간섭으로 해석하는 전통적 견해 는 자유의 중요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또한 그것은 자유의 본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소극적 자유론은 자유 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 그들에게 가용해야 한다는 보완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황경식, 1995, 146쪽). 천부적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면 자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부재하다고 자유를 행사할 수 없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로크 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정치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언론 자유론적 입장에서는 언론자유의 기본권적 성격에 대한 소유권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연법적 근거에 의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권영성 (1981). 『현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 박은정 (1987). 『자연법 사상』. 서울: 민음사.
- 양승태 (1991). Macpherson에서 Locke로 그리고 Locke를 넘어서. 『한국정치 학회보』, 제25집, 331-362.
- 이종린 (1964). 『서양정치사상』. 서울: 집문당.
- 임상원 (1994). 언론의 자유와 자유주의. 『언론과 사회』, 제6호, 5-39.
- 한국사회윤리연구회 편 (1993). 『사회계약론 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한병구 (1996).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황경식 (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Altschull, J. H. (1993). 『현대언론사상사』 (양승목 역). 서울: 나남. (원저 출판년도 1990).
- Berlin, I. (1992). 『계몽시대의 철학: 18세기의 철학자들』 (정병훈 역). 서울: 서광사. (원저 출판년도 1956).
- Bennett, J. (1979). A note on Locke's theory tacit consent. *The Philosophical Review*, 88, 27-42.
- Bowie, N., & Simon, R. (1990). 『사회정치철학』 (이인탁 역). 서울: 서광사. (원저 출판년도 1977).
- Gauthier, D. (1993). 『합의도덕론』 (김형철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원저 출판년도 1984).
- Locke, J. (1982). 『통치론』 (이극찬 역). 서울: 삼성출판사. (원저 출판년

도 1952).

- Macpherson, C. B. (1991).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이유동 역). 서울: 인간사랑. (원저 출판년도 1962).
- Mill, J. S. (1992). 『자유론』 (김형철 역). 서울: 서광사. (원저 출판년도 1859).
- Nozick, R. (1991). 『자유주의의 정의론』 (강성학 역). 서울: 대광문화사. (원저 출판년도 1974).
- Seung, T. K. (1999). 『직관과 구성』 (김주성 외 역). 서울: 나남. (원저 출판년도 1993).

<Abstract>

**A Study of Locke's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as
Proprietorship**

Jong-dae Moon
(Dongeui University)

This thesis discussed the nature of freedom of speech with emphasis on Locke's theory of social contract. First, I examined the nature of freedom of speech induced from Locke's social contract, and argued that the nature of Locke's freedom of speech exists on the self-ownership of humans. Secondly, I studied how Locke's right of self-ownership was related to the right of freedom of speech and how it is realized in civil society. I could analyze how freedom of speech was actualized with un-equality in the social relations. Thirdly, I investigated how Locke's possessive freedom of speech was materialized in the market society. I tried to find out the nature of freedom of speech actualization in the capitalist market society. Finally, I studied to what extent the state of Locke could intervene the freedom of speech and reconsidered the meaning of Locke's limit of natural right in modern society. Conclusively, Locke's notion of Natural Right and Law of Nature have greatly influenced contemporary idea of free speech. His idea helps understand the position of liberal democratic speech. It also shows well the rela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Natural Right and has helped us understand freedom of speech in terms of the posi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Keywords: Locke, social contract, freedom of speech as proprietorship, Natural Right]